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오청욱¹, 강혜경^{2*}

¹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²안보경영연구원

A Study on Visiting Caregiver's Perception of Elder Abuse

Chung-uk Oh¹, Hye-kyung Kang^{2*}

¹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²Security Management Institute

요약 본 논문은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학대신고 및 관련 교육경험을 중심으로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4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방문요양보호사 249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전체적인 노인학대 인식은 높았으며,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고, 재정적, 언어적, 방임 그리고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나, 다수의 경우가 신고경험이 없고, 알고 있는 신고기관 종류가 대부분 경찰로 다소 제한적이었다. 관련 교육에 있어서는 다수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요구도가 매우 높았으며, 노인학대의 사례와 대처방법,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방법 등 재가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주로 희망하였다. 이에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유형별 노인학대의 인식, 신고의무 및 신고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학대사례와 대처방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재가의 특성 상 가족들의 상담과 교육 또한 중요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visiting caregivers' perceptions and reporting of elder abuse. From January 13 to February 10, 2014, data were collected from 249 visiting caregivers working at homes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caregivers' perceptions of abuse were high overall. Physical abuse was the most common type, followed by financial, verbal, negligence, and emotional abuse. Most visitors recognized that it is important to require reporting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but most of them had no experience with reporting abuse, and the agencies that they knew were mostly the police. A majority of the visiting caregivers had attended an elder abuse program and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uch programs. The caregivers hoped that the programs would have specific examples of how to deal with elder abuse and family counseling methods, and other practical content for their work. Programs should focus on coping with individual cases, proper counseling methods, and awareness of elder abuse.

Keywords : Abuse perception, Abuse report, Education, Elder abuse, Visiting caregive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중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의학의 발달로 건강한 노후를 지내는 분들도 많지만 상

대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또한 증가하는 만큼 현대사회에서 노인간호 및 돌봄에 대한 비중은 매우 커지고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이후 가족들의 간호 및 돌봄이 가정에서 사회로 많이 전환되고, 관련 서비스 이용 또한 점점 보편화 되어 가족보다 실제 더 많은 시간을 노인대상

*Corresponding Author : Hye-kyung Kang(Security Management Institute)

Tel: +82-2-544-5938 email: givymicmac@hanmail.net

Received March 8, 2016

Revised (1st March 17, 2016, 2nd March 22,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자와 함께 하는 간호인력의 역할과 그 중요도는 점점 증가되고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출이 급속하게 증가했고, 이중 일차적인 노인의 돌봄서비스를 양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간호인력이 요양보호사이다[2]. 요양보호사는 중풍,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 전문적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인력으로 돌봄에 대한 가족의 상당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3]. 역할과 비중이 증가되고 요양보호사들의 양적 증가와 함께 노인문제의 중요 영역을 차지한 노인학대가 [4,5] 이제는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장기요양시설이나 병원 또는 요양보호라는 서비스 제공영역으로 그 문제의 범위와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5,6]. 학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가장 심각하고 두드러진 인권 침해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노인학대의 수와 정도 또한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7]. 이에 노인간호 및 돌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노인대상자와 접촉하는 주요 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요양보호사는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학대 사례의 발생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종사자로서의 신고의무도 다해야 한다 [8].

2014년 기준, 요양보호사로 당시 종사한 등록인원은 약 266,538명으로 이중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56,072명이고, 재가시설에 해당하는 방문요양보호사는 216,358명으로 보고되었다[1,2]. 이 통계는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의 수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보다 무려 약 4배가 넘는 것으로 현대사회 가정의 돌봄 상황과 노인대상자의 중증도 등과 맞물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서비스가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를 통해 보다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인학대에 대한 연구나 정책은 주로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요양시설의 급격한 팽창과 함께 시설거주 노인학대에 관한 논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9,10]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가노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다른 의료인력에 비하여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의 단기간 내의 상대적인 양적인 증가는 전문적인 서비스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11]. 특히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불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함께 한다는 점에서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인권 인식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인인권 인식 제고 및 관련 교육자료의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아래 재가시설에 등록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노인학대 신고와 교육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D광역시 및 C와 J도시 소재의 재가시설 10곳에 각각 등록되어 방문요양보호사에 종사하며,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들로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수는 선행연구를[12] 참고하여 중간정도의 효과크기($f=0.15$)를 기준하였으며,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계적 검정력과 유의수준을 각각 .08과 .05로 산출한 결과 요구되는 대상자의 수는 20%의 탈락률을 고려한 210명이었다.

설문지는 2014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각 재가시설 10곳에 등록되어 당시 방문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278명에게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257부를 회수하였으며(92.4%).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8부를 제외한 최종 249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노인학대 인식

Lim[13]의 노인학대 인식도구를 Kim et al.[12]이 수정 보완한 총 37문항으로 정서적 학대 10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언어적 학대 5문항, 재정적 학대 7문항, 방임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학대가 아니다」가 1점, 「심한 학대이다」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12]의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 이었고, 본 연구는 .82였다.

2.3.2 노인학대 신고

Kim[14]이 사용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항을 Kim et al.[12]이 노인에 맞게 수정 보완한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인학대의 예방에 있어 신고의 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노인학대의 신고 경험이 있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 이었다.

2.3.3 노인학대 교육경험

Kim[14]이 개발하고 김은정 등[12]이 수정 보완한 3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노인학대 교육참여 유무,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 그리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의 희망 내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고, 교육 희망 내용 문항에서는 다중응답을 허용하였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4$ 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 수집된 설문지는 SPSS version 18.0 for Window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인식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노인학대 신고 및 관련 교육경험은 실수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노인학대 신고와 교육경험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은 t-test와 ANOVA로 각각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참여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동의서 내용에는 연구 참여자의 익명이 보장됨과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이 포함되었으며, 추후에도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은 51-60세가 40.6%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여성이 68.7%로 남성보다 많았으며,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194명(77.9%)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음(44.1%), 기독교(26.1%), 카톨릭(13.7%) 순이었으며, 교육정도는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이 75.5%로 가장 많았다. 요양보호사 경력으로는 6-10년(40.6%) 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1-5년(26.5%), 11-15년(18.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rs)	< 30	8	3.2
	30-40	13	5.2
	41-50	78	31.3
	51-60	101	40.6
	> 60	49	19.7
Gender	Male	78	31.3
	Female	171	68.7
Marital status	Single - never married	9	3.6
	Married	194	77.9
	Widowed	31	12.5
	Divorced	15	6.0
Religion	Christian	65	26.1
	Buddhism	32	12.9
	Catholic	34	13.7
	Others	8	3.2
	None	110	44.1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31	12.5
	High school	188	75.5
	University or more	19	7.6
	Others	11	4.4
Work experience (yrs)	< 1	22	8.8
	1-5	66	26.5
	6-10	101	40.6
	11-15	47	18.9
	> 16	13	5.2

3.2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체평균은 3.75 ± 0.28 이었으며, 각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98 ± 0.36 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정적 학대 3.85 ± 0.29 , 언어적 학대 3.81 ± 0.44 , 방임 3.80 ± 0.17 그리고 정서적 학대 3.29 ± 0.39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Perception about Elder Abuse (N=249)

Type of Abuse	Min	Max	M±SD
Physical abuse	2.52	4.00	3.98±0.36
Verbal abuse	2.42	4.00	3.81±0.44
Emotional abuse	1.41	4.00	3.29±0.39
Economic abuse	2.03	4.00	3.85±0.29
Neglect	2.01	4.00	3.80±0.17
Total	2.67	4.00	3.75±0.28

3.3 노인학대 신고 및 교육경험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신고에서는 신고의무가

Table 3. Report and Education experience related to Elder Abuse (N=249)

Item	Category	n	%
Report on elder abuse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that reporting requirement in elder abuse prevention?	Yes	247	99.2
	No	2	0.80
Do you think that institutions are obliged to report this to help prevent elder abuse?	Yes	218	87.6
	No	31	12.4
Have you ever a report elder abuse?	Yes	42	16.9
	No	207	83.1
Do you know about the reporting organizations when you have found a elder abuse?	Yes	198	79.5
	No	51	20.5
Where is the institution that you know to report elder abuse?	Protection agency	34	13.7
	Police	159	63.8
	I don't know	56	22.5
Education experience for elder abuse			
Have you ever attended a educations or seminars related to elder abuse?	Yes	153	61.4
	No	61	38.6
Do you think the program needs related to elder abuse and to report for the visiting caregiver?	Yes	201	80.7
	No	48	19.3
What contents do you think should be included, if you study about prevention of elder abuse? (Multiple responses, n=467)	How to find the abused elderly	89	19.1
	Cases of abue and how to cope	165	35.3
	Effective care for abused elderly	85	18.2
	Family counseling & teaching	128	27.4

Table 4. Perception of the Elder Ab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9)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abuse		Physical abuse		Verbal abuse		Emotional abuse		Economic abuse		Neglect	
		M±SD	t/F (P) df	M±SD	t/F (P) df	M±SD	t/F (P) df	M±SD	t/F (P) df	M±SD	t/F (P) df	M±SD	t/F (P) df
Age (yrs)	< 30	3.76±0.17		3.96±0.40		3.70±0.26		3.78±0.23		3.49±0.35		3.76±0.35	
	30-40	3.78±0.27	3.69	3.93±0.23	0.67	3.68±0.23	-0.59	3.75±0.05	0.49	3.53±0.45	1.56	3.70±0.38	0.54
	41-50	3.68±0.22	(.031)	3.94±0.12	(.482)	3.62±0.29	(.442)	3.70±0.40	(.556)	3.42±0.39	(.124)	3.69±0.42	(.503)
	51-60	3.66±0.30	247	3.96±0.02	247	3.71±0.31	247	3.75±0.23	247	3.55±0.23	247	3.86±0.41	247
	> 60	3.70±0.33		3.93±0.23		3.69±0.21		3.70±0.35		3.51±0.28		3.75±0.27	
Gender	Male	3.69±0.22	-0.45 (.235)	3.80±0.19	-1.06 (.068)	3.73±0.21	-1.60 (.129)	3.52±0.22	-0.70 (.469)	3.67±0.22	-0.56 (.119)	3.66±0.30	-1.07 (.270)
	Female	3.75±0.28	247	3.84±0.15	247	3.75±0.22	247	3.60±0.14	247	3.77±0.49	247	3.70±0.33	247
Marrital status	Single - never married	3.73±0.33		3.23±0.34		3.79±0.30		3.46±0.43		3.86±0.39		3.81±0.34	
	Married	3.78±0.22	-1.09 (.230)	3.34±0.23	0.30 (.750)	3.81±0.28	0.24 (.809)	3.51±0.21	1.45 (.259)	3.91±0.21	1.05 (.125)	3.82±0.26	-1.23 (.078)
	Widowed	3.69±0.51	245	3.40±0.15	245	3.79±0.38	245	3.48±0.43	245	3.90±0.30	245	3.79±0.35	245
	Divorced	3.71±0.40		3.25±0.12		3.80±0.40		3.55±0.41		9.89±0.41		3.80±0.27	
Religion	Christian	3.77±0.41		3.88±0.08		3.81±0.20		3.58±0.50		3.84±0.32		3.87±0.43	
	Buddhism	3.70±0.21	0.44 (.559)	3.77±0.41	0.87 (.376)	3.79±0.22	0.05 (.798)	3.61±0.33	1.18 (.280)	3.78±0.18	2.85 (.452)	3.86±0.17	1.05 (.382)
	Catholic	3.72±0.28		3.85±0.17		3.80±0.40		3.48±0.40		3.80±0.20		3.81±0.33	
	Others	3.70±0.45	247	3.79±0.33	247	3.77±0.13	247	3.49±0.23	247	3.75±0.35	247	3.85±0.09	247
	None	3.73±0.34		3.78±0.41		3.77±0.56		3.51±0.41		3.72±0.39		3.82±0.2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or less	3.34±0.36		3.81±0.11		3.68±0.50		3.50±0.15		3.74±0.34		3.78±0.55	
	High school	3.39±0.12	0.49 (.350)	3.80±0.22	3.56 (.152)	3.70±0.25	2.44 (.080)	3.58±0.23	0.71 (.245)	3.76±0.23	0.32 (.788)	3.80±0.41	-0.41 (.207)
	University or more	3.40±0.26	246	3.79±0.15	246	3.72±0.23	246	3.59±0.25	246	3.68±0.23	246	3.79±0.35	246
	Others	3.357±0.25		3.78±0.10		3.69±0.37		3.49±0.41		3.77±0.33		3.81±0.24	
	< 1 ^(a)	3.70±0.25		3.84±0.25		3.81±0.33	2.05 (.046)	3.78±0.37	0.39 (.320)	3.78±0.44	0.92 (.278)	3.86±0.30	0.84 (.319)
Work experience (yrs)	1-5 ^(b)	3.87±0.10	1.15 (.256)	3.82±0.31	0.60 (.415)	3.95±0.20		3.83±0.30		3.73±0.26		3.83±0.18	
	6-10 ^(c)	3.68±0.25		3.77±0.15		3.80±0.28		3.84±0.41		3.71±0.39		3.80±0.27	
	11-15 ^(d)	3.72±0.26	247	3.78±0.43	247	3.66±0.23		9.78±0.21		3.80±0.32		3.80±0.31	
	> 16 ^(e)	3.71±0.30		3.71±0.23		3.65±0.34		9.80±0.23		3.79±0.24		3.79±0.12	

Table 5. Perception of the type of Elder abuse on Report and an Educational experience (N=249)

Questions	Response	Total abuse		Physical abuse		Verbal abuse		Emotional abuse		Economic abuse		Neglect	
		M±SD	t/F (P) df	M±SD	t/F (P) df	M±SD	t/F (P) df	M±SD	t/F (P) df	M±SD	t/F (P) df	M±SD	t/F (P) df
Report on elder abuse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that reporting requirements in elder abuse prevention?	No	3.76±0.17	0.12 (.799) 247	3.72±0.40	-0.79 (.499) 247	3.71±0.25	-0.59 (.442) 247	3.47±0.23	0.29 (.665) 247	3.88±0.35	0.45 (.605) 247	3.76±0.25	0.75 (.405) 247
	Yes	3.73±0.27		3.94±0.15		3.82±0.29		3.38±0.40		3.78±0.40		3.60±0.35	
Do you think that institutions are obliged to report this to help prevent elder abuse?	No	3.69±0.22	-0.79 (.399) 247	3.80±0.20	2.06 (.048) 247	3.73±0.21	-1.60 (.129) 247	3.41±0.42	-0.70 (.469) 247	3.77±0.25	-0.05 (.887) 247	3.65±0.30	-0.35 (.699) 247
	Yes	3.75±0.28		3.95±0.16		3.85±0.24		3.40±0.44		3.77±0.39		3.74±0.33	
Have you ever a report elder abuse?	No	3.80±0.30	1.09 (.258) 246	3.34±0.51	0.30 (.750) 246	3.69±0.31	0.24 (.809) 246	3.52±0.43	1.11 (.259) 246	3.66±0.39	0.18 (.798) 246	3.63±0.34	1.29 (.189) 246
	Yes	3.50±0.21		3.34±0.15		3.60±0.28		3.46±0.43		3.65±0.40		3.56±0.35	
Do you know about the organizations found that when elder abuse can be reported?	No	3.78±0.51	0.75 (.459) 247	3.88±0.08	0.87 (.376) 247	3.81±0.28	0.05 (.798) 247	3.58±0.55	1.10 (.280) 247	3.84±0.32	1.10 (.270) 247	3.65±0.43	-0.55 (.550) 247
	Yes	3.70±0.24		3.85±0.17		3.73±0.40		3.48±0.43		3.75±0.39		3.70±0.33	
Where is the institution that knows when to report elder abuse is found?	Protection [ⓐ]	3.34±0.36	1.50 (.241) 24	3.81±0.11	3.56 (.042) 24	3.59±0.54	2.44 (.080) 24	3.21±0.85	1.52 (.241) 24	3.44±0.34	0.15 (.899) 24	3.50±0.85	1.40 (.245) 24
	Agency [ⓑ]	3.87±0.25		3.98±0.05		3.60±0.21		3.60±0.28		3.48±0.23		3.63±0.35	
	I don't know [ⓒ]	3.67±0.35		4.00±0.00		3.65±0.37		3.47±0.43		3.67±0.33		3.59±0.24	
Education experience for elder abuse													
Have you ever attended a education and seminars related to elder abuse?	No	3.70±0.20	1.19 (.219) 247	3.78±0.25	-0.25 (.699) 247	3.79±0.31	-0.29 (.674) 247	3.60±0.37	1.01 (.320) 247	3.82±0.44	1.41 (.156) 247	3.80±0.30	0.05 (.959) 247
	Yes	3.62±0.25		3.77±0.15		3.80±0.28		3.38±0.41		3.71±0.39		3.81±0.27	
Do you think this program needs related to elder abuse and to report for the visiting caregiver?	No	3.65±0.31	0.08 (.891) 247	3.74±0.40	2.05 (.046) 247	3.89±0.15	0.45 (.659) 247	3.55±0.46	0.54 (.569) 247	3.60±0.38	-0.77 (.442) 247	3.90±0.17	2.08 (.049) 247
	Yes	3.73±0.28		3.89±0.27		3.90±0.29		3.50±0.55		3.73±0.40		3.71±0.35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47명(99.2%)로 대부분이었으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제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18명(87.6%)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신고경험에 대한 문항에서는 신고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명(16.9%), 신고경험이 없는 경우가 207명(83.1%)이었다. 신고기관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알고 있는 경우가 198명(79.5%), 모른다고 답한 경우가 51명(20.5%)이었으며, 신고기관 종류에 대한 문항에서는 경찰이 159명(6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른다가 56명(63.8%), 노인보호전문기관이 34명(13.7%)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관련 교육 또는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에서 한 번 이상 참석한 경우가 153명(61.4%)로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는 61명(38.6%)보다 많았으며,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노인학대 및 신고에 대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그렇다가 201명(80.7%)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학대 사례와 대처방법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165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족의 상담과 교육방법이 128명(27.4%), 학대받은 노인을 일상에서 용이하

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89명(19.1%) 그리고 학대받은 노인의 효율적인 돌봄이 85명(18.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총노인학대 인식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3.69, p=.031$). 언어적 학대 유형에서는 경력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05, p=.046$), 사후검정결과 1-5년의 경력이 11-15년, 16년 이상의 경력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4).

3.5 노인학대의 유형별 인식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 및 교육경험

유형별 학대인식에 따른 신고 및 교육경험으로는 신체적 학대에서 신고의무제도가 노인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고($F=2.06, p=.048$),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를 위해 알고 있는 기관의 유형을 묻는 문항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응답이 경찰과 모른다는 응답에 각각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3.56, p=.042$). 그리고 신체적 학대 유형에서 방문요양보호사를 위한 노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 여부를 묻는 문항에

서 유의한 차이를($F=2.05, p=.046$) 나타냈다. 그리고 학대 유형 방입에서는 방문요양보호사를 위한 노인학대 및 신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08, p=.049$)(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돌봄을 받는 가정의 각 노인대상자들에 대한 노인학대의 인식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와 관련된 인식 제고 및 교육자료의 기본방향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노인학대는 국가와 민족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15,16] 인권존중의 개념에서 받아들여지는 노인학대에 대한 보편적 인식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17,18]. 노인장기요양병원의 의료종사자 또는 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인식에 관한 유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어적 학대와 신체구속, 신체위협, 신체학대, 성적수치심, 정서적 학대 그리고 요구무시 등 거주 노인에 대한 학대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17,19-21].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전체평균은 3.75 ± 0.28 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게 그리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낮게 인식되었다. 이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12,22].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학대와 같은 물리적 외부의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경우는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정서적 학대는 순간순간의 포착이 쉽지 않아 노인대상자가 먼저 호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견이 쉽지 않은 만큼 학대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서적 학대 등과 같이 물리적인 특징을 보이지 않는 학대 유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발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일부 선행연구와 [12,22] 달리 재정적 학대가 언어적 학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자들이 노인 돌봄 대상자의 가정에서 많은 일상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일상과 관련한 경제적인 부분을 보다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학대 신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신고의무가 노인학대 예방에 중요하며 특히 신체적 학대 유형에서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하고($F=2.06, p=.048$) 있었지만 실제 신고한 경험은 16.9%로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경험이 낮게 나타난 것은 실제 신고에 따른 노인대상자의 가족과의 관계, 신고기관에서 질문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고한 방문요양보호사에게 부담을 주고, 번거롭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현장의 소리와 선행연구[10,23-25]를 감안할 때 신고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부담의 감소와 함께 신고의무자에 대한 사명인식을 보다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 신체적 노인학대의 경우 발견 시 알고 있는 신고기관의 많은 유형이 경찰로 제한적이고, 신고기관의 유형과($F=3.56, p=.042$), 방입의 학대형태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를 감안한다면 노인학대 형태에 대한 명확한 지식 제공과 더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보다 많은 역할과 많은 종류의 기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학대 교육 경험에 있어서는 관련 교육 또는 세미나에 참석한 요양보호사들이 61.4%로 비교적 많게 나타나 최근 요양보호사들의 양성과 관리에 있어 직무교육의 의무와 정례시행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가 80.7%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재가시설과 관련된 환경과 상황에 따른 보다 세분화된 노인학대에 대한 관련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의 노인학대 관련 교육경험이 노인학대 인식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3,26]를 근거할 때 본 연구에서 교육경험 또는 세미나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경우가 38.6% 정도임을 고려, 노인인권 및 학대 관련 교육에 대한 보수 또는 직무교육 등의 참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학대 교육 내용 중 희망하는 내용으로는 학대받은 노인의 사례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이 가장 많아 일부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으며[12,27], 이는 방문요양보호사들 또한 재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에 대한 학습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학대받은 노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방법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돌봄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상담자와 교육자로서의 역할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짐작됨에 따라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요구와 수준

에 맞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구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학대 신고 및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노인학대 인식의 전체평균은 3.75±0.28로 비교적 높았으며,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이어 재정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 그리고 정서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신고의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99.2%) 다수의 경우가 신고경험이 없으며, 알고 있는 신고기관 종류가 대부분 경찰로 다소 제한적이었다. 대부분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요구도가 매우 높았으며, 희망 내용 또한 노인학대 사례와 대처방법 등으로 재가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또는 세미나 개최 시 유형별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무 및 신고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구체적인 학대 사례와 대처방법과 같은 실제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장기요양거주시설과 달리 재가의 특성상 가족들의 상담 및 교육 내용 또한 중요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재가시설 방문요양보호사들의 노인학대 인식에 대한 사례 연구와 신고 및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와 함께 재가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적합한 학대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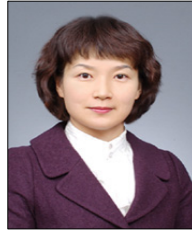
- [1] Statistics Korea, Long - Term Care Insurance statistics: expertise into long-term care institutions 2014, Available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22&vw_cd=MT_OTITLE&list_id=350_35006_A00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K2 (accessed Apr., 24, 2015)
- [2] National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Available From: <http://www.nhis.or.kr/wbdy/retrieveWbdy01.xx> (accessed May, 27, 2015)
- [3] H. K. Choi, "A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of Families and Care Workers on Elder Care Services in Nursing Facilities", *Family and Culture*, 22(4), pp. 1-31, 2010.
- [4] S. D. Park, O. H. Lee, S. Y. Myoung, S. M. Park, *Elderly Welfare*. p.10-366, Samwoosa Publishers, 2007.
- [5] H. K. Han, "A Study on Sources of Improperness of Elder Abuse Reporting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Content Analysis of Experts' Perception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6(4), pp. 767-783, 2006.
- [6] H. K. Choi,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Burnout of Staffs Taking care of Elders in Nursing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8(1), pp. 157-176, 2008.
-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lder abuse Report 2011, Available From: <http://stat.mohw.go.kr/front/statData/publicationView.jsp?menuId=41&bbSeq=7&nttSeq=18800&searchKey=&searchWord=&nPage=1> (accessed Jan., 15, 2014)
- [8]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lderly Welfare Law; Elder Abuse Report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etc(6 Article 39)*,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query=%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undefined> (accessed Jan., 15, 2014)
- [9] W. H. Cho, "Effect of the Resident's Human Rights on Abuse-drivn Conditions to Staffs in Nursing Home for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1, pp. 429-450, 2008.
- [10] D. S. Son,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the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of Certified Caregiv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8, pp. 299-322, 2010.
- [11] A. J. Gil, "A Study on the Identity of Care Workers' Caring Rol",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eonam University*, 2015.
- [12] E. J. Kim, E. S. Lee, K. M. Park, "A Study on Nurses' Perception of Elder Abuse",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18(2), pp. 29-37, 2014.
- [13] B. H. Lim, "Studies on Elder Abuse Perception related to Social characteristics",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01.
- [14] H. J. Kim, "Knowledge of ED Nurses on Child Abuse", *Graduate School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008.
- [15] Y. S. Lee, A. L. Moon, C. Gomez, "Elder Mistreatment, Culture and Help-Seeking: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Older Chinese and Korean Immigrant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6(3), pp. 244-269, 2014. DOI: <http://dx.doi.org/10.1080/08946566.2013.820656>
- [16] J. L. Krienert, J. A. Walsh, M. Turner, "Elderly in America: A Descriptive Study of Elder Abuse Examining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 Data, 2000-2005",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1(4), pp. 325-345, 2009. DOI: <http://dx.doi.org/10.1080/08946560903005042>
- [17] B. Friedman, E. J. Santos, D. V. Liebel, A. J. Russ, Y. Conwell, "Longitudinal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Elder Mistreatment Among Older Adults Receiving Home Visiting Nursing”,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7(1), pp. 34-64.
DOI: <http://dx.doi.org/10.1080/08946566.2014.946193>

- [18] P. Amanda,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lder abuse*, p.8-235, Abingdon, Oxon; New York: Routledge, 2013.
- [19] K. J. Kwon, S. Y. Lee, T. J. Park, “Analysis on Elder Abuse of the Korea Elderly Long-term Care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1), pp. 553-560,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553>
- [20] Y. S. Park, E. J. Park. “A Study on the Plans for Countermeasure Research against Elderly Abuse to Improve the Elderly’s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Welfare institute of Korea*, 17, pp. 133-149, 2015.
- [21] A. Sandmoe, M. Kirkevold, “Nurses’ clinical assessments of older clients who are suspected victims of abuse: An exploratory study in community care in Norway”,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1 - 2), pp. 94 - 102, 2011.
DOI: <http://dx.doi.org/10.1111/j.1365-2702.2010.03483.x>
- [22] S. K. Jung, “A research for reporter recognition level of Elder Abuse of responsible person and counter move behavi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2007.
- [23] K. J. Kwon, “The Study on Mandatory Reporting of Elder Abuse”, *Social Work Practice & Research*, 12(1), pp. 39-64, 2015.
- [24] S. S. So, “Attitude to Elderly Human Rights and Occupational Awareness of Long-Term Care Givers”, *Global Health Nursing*, 4(2), pp. 59-67, 2014.
- [25] Y. S. Lee, K. H. Woo,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Elder Abu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ome Care Worker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3(1), pp. 85-103, 2013.
- [26] H. M. Ba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Elder Abuse: Focused on Mandatory Reporter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3(1), pp. 211-234, 2009.
- [27] K. K. Kim, “Development of a Web-based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working in Nursing Homes on Human Rights of Older Adults”,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40(4), pp. 463-472, 2010.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0.40.4.463>

오 청 욱(Chung-uk Oh)

[정회원]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스포츠의학과 (체육학석사)
- 2014년 2월 : 카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대체의학, 군진의학

강 혜 경(Hye-kyung Kang)

[정회원]



- 2010년 8월 : 한양대학교 임상간호정보대학원 노인 및 치매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한양대학교대학원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안보경영연구소 연구원

<관심분야>
노인 및 치매간호, 여성건강, 기초간호과학